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853,359,653	55,600,790
일반회계	1,502,222,558	45,066,677
특별회계	351,137,095	10,534,113
공기업특별회계	253,640,465	7,609,214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565,670	46,97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2,380,823	3,371,42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9,693,972	4,190,819
기타특별회계	97,496,630	2,924,899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6,922,205	207,666
수질개선특별회계	15,074,687	452,241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8,982,164	569,465
기반시설특별회계	406,058	12,182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130,115	3,903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326,987	69,81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418,740	42,562
주택사업특별회계	103,588	3,108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8,301,367	1,449,041
지하수특별회계	3,830,719	114,922

제 2 조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다.

제 3 조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611,936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8,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이후 교부되는 국도비와 교부세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